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구

내 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¹⁾,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²⁾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측정하여야 하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으로 각각 구분되며,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측정항목은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측정시기의 연말 집중현상 방지를 위하여 민감계층 이용 4개 시설군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소유자등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밖에 나머지 일반시설의 소유자등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2016. 12. 22. 신설)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 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³⁾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보육정책DW시스템’(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의 어린이집 시설 현황과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점검실적 및 교육현황을 확인하였다.

3) 유지기준을 50%미만 초과한 경우(50-60-80만원), 유지기준을 50%이상 100%미만 초과한 경우(80-100-130만원), 유지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경우(130-160-200만원), 유지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200-250-300만원)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구 ○○○○과)

○구 ○○동의 ○○어린이집은 2017. 1. 20. 연면적 482.31㎡의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연면적 430㎡이상의 민간어린이집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은 2018. 1. 19.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2018. 7. 1.부터 12. 31.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시설의 소유자등은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다.

○구 ○○○○과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시설의 소유자등이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신규교육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안내,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현황

시설군	시설명	주소	소유자	인가일자 (관리대상)	연면적 (㎡)	위반사항	비고
어린이집	○○ 어린이집	○구 ○○○길 ○○ (○○동)	○○○	2017.1.20	482.31	- 최초교육 미이행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구 ○○○○과)

○구 ○○동의 ○○어린이집은 1997. 8. 30. 연면적 396.98㎡의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은 후, 2016. 10. 6. 118.04㎡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515.02㎡로 증가되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연면적 430㎡이상의 민간어린이집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은 2017. 10. 5.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2017. 7. 1.부터 12. 31.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시설의 소유자등은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신규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2017년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고 기한 내 보고도 하지 않았다.

○구 ○○○○과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시설의 소유자등이 신규교육을 받지 않고, 2017년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하였음에도, 신규교육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안내,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현황

시설군	시설명	주소	소유자	인가일자 (관리대상)	연면적 (㎡)	위반사항	비고
어린이집	○○ 어린이집	○구 ○○○○길 ○○(○○동)	○○○	1997.8.30 (2016.10.6)	396.98 (515.02)	- 최초교육 미이수 - 2017년 자가측정 미이행	증축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시정]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시정]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지 않고, 2017년도 실내공기질을 미측정하고 보고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